

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(제5조의3제1항 관련)

1.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.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.

구분		차등요율
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	1 미만	- 연 비율 1천분의 0.04
	1 이상 ~ 2 미만	- 연 비율 1천분의 0.02
	2 이상 ~ 3 미만	0
	3 이상 ~ 4 미만	+ 연 비율 1천분의 0.02
	4 이상	+ 연 비율 1천분의 0.04

비고: 총 출연금액 산정 시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출연금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.

2.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.

금융회사등	출연요율
농업협동조합	연 비율 1천분의 0.37
수산업협동조합	연 비율 1천분의 0.54
상호저축은행	연 비율 1천분의 0.40
새마을금고	연 비율 1천분의 0.82
신용협동조합	연 비율 1천분의 0.71
산림조합	연 비율 1천분의 0.77